

##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(의견표명)

### □ 민원 제목 : 개발제한구역 내 현황 농로(지목 : 구거)를 사비로 포장할 수 있도록 허가 요청

#### □ 신청 취지

- 서초구 00동 000~000번지 등 진입로에 장마로 인한 매몰 등 사고 위험 산재하고 있어 포장 필요함
- 민원 대상지 인근 000교회 및 000원 진입로가 포장되어 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민원대상지도 포장 요청

#### □ 피신청인 등의 주장

- 그린벨트 내 구거 포장 불가함
  - 농로로 사용 중인 구거의 포장이 침수피해 대책인지 의문
  - 포장으로 해결하면 자칫 그린벨트 내 여타지역도 모두 포장해야 되는 상황 우려

#### □ 사실관계

- 민원 첫 번째 사유인 침수피해 위험성은 인정됨.
  - 최근 피해가 있었음을 담당부서가 인정하고 있고 위성사진상으로도 피해 추정됨
- 다만, 거론한 2곳의 포장경위 파악이 어렵고 지목도 상이하여 민원대상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짐에 따라 두 번째 사유는 이유 없음

#### □ 관계 법령 등

-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4호, 동법시행령제14조제9호 해당 여부 : 부
  - 첫째,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둘째, 주민 공동

이용시설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건축되었거나 설치된 마을 공동작업장·마을공동회관·공동구판장·공판장 또는 목욕장 등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받아 할 수 있지만, 민원대상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. 따라서 농로포장 등 토지 형질 변경 불가함.

- ※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, 성토, 정지 또는 포장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),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(대법원 1993. 8. 27. 선고 93도403 판결, 2005. 11. 25. 선고 2004도8436 판결 등 참조).

-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4호, 동법시행령제14조제3호 해당 여부 : 부

- 농로를 설치하기 위한 형질변경은 허가받아 가능함. 가령 농지의 일부를 농로 설치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가능함.
- 농로로 사용 중인 구거 일부를 현황대로 인정하여 그 부분을 농로로 허가받아 형질변경한다면 포장이 가능하겠지만 구거를 농로로 형질변경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임.

-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2조 해당 여부 : 부

- 위 규칙에 의하면 마을 공동사업으로서 마을도로(진입로 포함) 및 구거를 정비하거나 석축을 개수·보수하는 행위, 농로를 개수·보수하는 행위 등은 개발제한구역에서도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임.

- 마을공동사업 여부 : 부

·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-6942호(2016.12.20.),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-20069(2016.12.20.)에 의하면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은 마을 대표자와 마을회 회원의 공동 명의로 허가 신청하여 설치하고, 허가 후에도 공동명의로 관리하게 되는데,

- 마을회는 첫째, '마을'에 1년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마을회 대표 1인, 마을회 회원 20인 이상(세대주 또는 가구대표)으로 구성되고, 둘째 마을회는 마을 전체 가구의 1/2 이상이 동의할 것을 요건으로 함.
- 본 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고 마을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등 마을공동사업으로 보기 어려움.
-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구거 정비 또는 농로 개·보수 해당여부 : 부
  - 만약 마을공동사업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민원인이 요청하는 진입로 포장을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구거 정비 또는 농로 개·보수로 보기도 쉽지 않음.
  - 구거 정비라면 농로로 사용 중인 구거 일부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거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타당하고, 현황 농로 개·보수 차원의 포장을 하는 것은 구거 관리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임.

#### □ 판단 및 결론

- 민원인은 여름철 침수 피해를 이유로 진입로 포장을 요청하고 있음. 현장조사 결과 침수피해 대책으로 진입로 포장이 최우선이고 적절한지 의문임. 배수로 정비 등 보다 명확한 대책을 선행하고 차후에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 순서로 보임.
- 담당부서는 민원대상지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관 설치 등 배수로 정비계획 수립하고 이행해야 함
- 결론 : 의견표명  
올해 장마철 이전에, 배수로 정비 등 침수피해 대책 세우고 이행할 것을 의견 표명함